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12

2023년 12월 22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3년 10월 16일

다. 회 부 일 : 2023년 10월 23일

라. 상 정 일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12월 1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한영희)

가. 제안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21. 6. 23. 개정, 2021. 12. 23. 시행)에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제1호다목 중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나) 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현행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00MB마다 2,5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 표] **수 수 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 법령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주무부서(정보공개담당관)와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8. 10. ~ 8. 30.)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개정안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 본 조례 근거 법률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현재 용량기준에 맞게 인하하여 개선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6.23. 일부개정, 2021.12.23.시행

나.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안 제3조〔별표〕 1 - 다-4)-나)

○ 안 별표(1 - 다-4)- 나))는 행정정보 공개(45종)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중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조정(현행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개정 1GB마다 800원)하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2021.7.15.) 중 〉

조항	시행일	주요내용	후속조치
⑩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2021.12.23~)**			
시행규칙 별표 1	**'21.12.23.**	■ '21.12.23.부터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GB 당 800원으로 부과 (기존)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개정) 1GB마다 800원	■ '21.12.23.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선택사항) 행안부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행일에 맞춰서 개별 조례 개정 ※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개별 조례에 규정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다. 행정정보의 공개(45종)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table>
<tr><th>수수료 징수대상사무</th><th>단위</th><th>금액</th></tr>
<tr><td rowspan="2">나) 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td><td>1건(700MB 기준)마다</td><td>5,000원</td></tr>
<tr><td>700MB 초과 시 350MB 마다</td><td>2,500원</td></tr>
</table>
</td><td>〔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다. 행정정보의 공개(45종)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table>
<tr><th>수수료 징수대상사무</th><th>단위</th><th>금액</th></tr>
<tr><td>나) 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td><td>1GB마다</td><td>800원</td></tr>
</table>
</td></tr>
</table>

○ 다만, 본 개정안의 수수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본 정보공개 수수료를 행정안전부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행일(2021.12.23.)에 맞추어 개별 조례를 개정·시행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음에도,

* "정보공개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4183(2021.7.15.))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정부 수수료 금액과 동일하게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인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6.23. 일부개정, 2021.12.23.시행

- 위임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적기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현황 〉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단위: 건, 천원)

구 분	합계		2023. 6월		2022년		2021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보공개 관련(전체)	3,881	6,741	556	812	973	2,323	1,114	1,792	1,238	1,814
전자파일의 복제	193	2,574	34	421	54	1,567	52	1.164	53	585

다. 부칙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의 지연으로 수수료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입법을 통한 안정적 제도 운영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12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021. 6. 23. 개정, 2021. 12. 23. 시행)에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 제1호다목 중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나) 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현행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00MB마다 2,500원을 1GB마다 800원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 표] **수 수 료(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전자파일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 법령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주무부서(정보공개담당관)과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3. 8. 10. ~ 8. 30.)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 작성자 : 재무국 세무과 전종환(☎2133-3440)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나) 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 란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나) 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	1GB마다	8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다. 행정정보의 공개(45종)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table>
<tr><th>수수료 징수대상사무</th><th>단위</th><th>금액</th></tr>
<tr><td rowspan="2">나) 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td><td>1건(700MB기준)마다</td><td>5,000원</td></tr>
<tr><td>700MB 초과 시 350MB</td><td>2,500원</td></tr>
</table>

</td><td>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제3조 관련)

1. 공통수수료

다. 행정정보의 공개(45종)

4)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

<table>
<tr><th>수수료 징수대상사무</th><th>단위</th><th>금액</th></tr>
<tr><td>나) 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매체비용 별도)</td><td>1GB마다</td><td>800원</td></tr>
</table>

</td></tr>
</table>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써 **정보이용을 청구하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의 지방세외수입**을 **받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23.6.23.개정, 2023.12.23. 시행) 에서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을 변경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징수 기준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이용자로부터 조례에 의거한 수수료를 징수 지방세외수입 확충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세무과 전종환(02-2133-3440)